

"복음으로,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(신16:11, 막1:15, 행2:47)"

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

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

To. 각교회

수 신 노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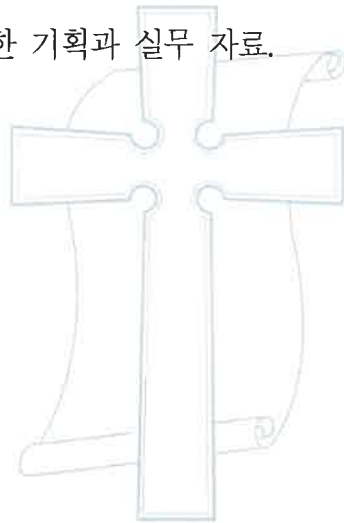
참 조 서기/회계/재정부장

제 목 2022년 교회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획과 실무 자료 안내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.

본 총회 재정부는 2022년도 교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획과 실무에 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니 각 노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고 소속 지교회가 원활하게 2022년도 교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속 지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22년도 교회 예산을 위한 기획과 실무 자료. 끝.



총 회 장 류 영
재 정 부 장 장 오
세 정 대 책 위 원 장 김



직원 이예찬 과장 권진미 총무 안영민 사무총장 김보현

시행 행정·재무처-14300 (2021.11.11.)

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, 5층 (연지동,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)

전화

전송

/ lyc2525@pcknet.org

/www.pck.or.kr

/공개

2 0 2 2 년 예산을 위한 기획과 실무

1 예산 기본 지침

- 2 0 2 2 년 목회 사역의 목표와 방향 제시
- 예산을 위한 예비적 분석 검토
 - 1) 경상 수지를 위한 검토
 - ① 최근 3 년간 수입 지출 현황 분석
 - ② 교인 수에 대한 변동 추이
 - ③ 주변 환경(재개발, 재건축 등) , 사회적 환경 분석
 - ④ 사업비 등 부족액 충당 종합 방안
 - ⑤ 신규 교역자, 직원 및 퇴직 변동(퇴직 포함)
 - ⑥ 장 . 단기적 재정기획
 - 2) 자본적 수지를 위한 검토
 - ① 자산 및 부채 증감 현황 분석
 - ② 신규 취득 차량, 사택, 임대보증금, 차입금 조달
 - ③ 차입금 등 부채 상환 계획
 - ④ 불용자산 처분 계획
 - 3) 특별회계를 위한 검토
 - ① 특별회계 재정현황 분석
 - ② 기금(선교, 구제, 교육, 건축) 조성 기획
- 예산 편성 원칙
- 각부 사업운영계획서
- 계속사업 및 이월 사업 명세서

2 수입 예산 지침

- 경상수입

- 1) 일반 현금 항목별 수입
(최근 3 년간 고인 변동, 지역적 환경, 사회적 환경 분석에 따른 현금수입)
 - 2) 목적현금(선교, 교육, 구제현금 등)
 - 3) 특별현금(부흥회 현금, 기념사업 및 건축현금 등)
- 경상 외 수입 : 정기예금 만기 환금액, 임차보증금 회수액 등
 - 잡수입 : 이자수입, 현금 외 기타 잡수입
 - 자본수입 : 차입금, 자산처분 수입액 등
 - 특별회계 : 적립금, 기금 조성 및 전입 수입액

3 . 사업비 예산 지침

- 경상지출
 - 1) 고정비 : 사례비(조정) , 제세공과금(종교인소득세, 사회보장보험료) , 전기, 수도료, 연료비, 임대료, 상회비, 차량유지비, 차입금 이자 등
 - 2) 변동 사업비 : 2 0 2 2 년 목회 목적과 방향에 따른 사업비
사업별 우선순위(교육비, 선교비, 구제비, 봉사비 등)
 - 3) 운영비 : 행정 및 유지관리비, 퇴직금 등
 - 4) 계속사업, 이월사업비
- 경상 외 지출
 - 1) 자본적 지출액 : 차량 구입비, 사택 구입비, 대수선비, 사택 임차 보증금, 차입금 상환액
 - 2) 예비비 : 5 % 이내
- 특별회계 지출
기금(선교, 건축 등) 및 적립금(퇴직적립금, 수선충당금) 조성

비 지출

4 . 제세공과금, 공적보험료 등 예산 반영

- 종교인 소득 :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

종교인 소득세 : 종교인 100% 부담

종교인 총소득 - 필요경비 - 인적공제 - 국민연금 = 과세표준

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
산출세액 - (자녀세액공제, 기부금세액공제, 표준세액공제, 전자세액공제)

= 총결정세액

총결정세액 -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 공제 = 납부세액

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:

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	필요경비
2 천만원 이하	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
2 천만원 초과 4 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(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
4 천만원 초과 6 천만원 이하	2,600만원 + (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6 천만원 초과	3,200만원 + (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
종합소득세 세율표(종교인소득)

세 율 표

		2 0 1 8 년			
과세표준	귀속년도	종합소득세		지방소득세	
		서울	누진공제액	서울	누진공제액
1, 2 0 0 만원이 하		6 %		0 . 6 %	
1, 2 0 0 만원초 과		1 5 %	1 0 8 만원	1 . 5 %	1 0 8 천원
4, 6 0 0 만원이 하					
4, 6 0 0 만원초 과		2 4 %	5 2 2 만원	2 . 4 %	5 2 2 천원
8, 8 0 0 만원이 하					
8, 8 0 0 만원초 과		3 5 %	1, 4 9 0 만 원	3 . 5 %	1, 4 9 0 천 원
1 억 5 천만원 이 하					
1 억 5 천만원 초 과		3 8 %	1, 9 4 0 만 원	3 . 8 %	1, 9 4 0 천 원
3 억원 이하					
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		4 0 %	2, 5 4 0 만 원	4 . 0 %	2, 5 4 0 천 원
5 억원 초과		4 2 %	3, 5 4 0 만 원	4 . 2 %	3, 5 4 0 천 원

- 퇴직소득 :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

퇴직소득세 : 종교인, 직원 1 0 0 % 본인 부담

※ 1 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

- 사회보장보험료

건강보험료 부담 : 사업주 5 0 % , 본인 5 0 % 부담

※ 사업주 부담분은 사회보장보험료 계정

건강보험료 요율

1)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22년 1만분의 699로 한다.

2)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22년 205.3원으로 한다.

국민연금 부담 : 사업주 50%, 본인 50% 부담

국민연금 요율 : 보험료 보수액 9%

※ 사업주 부담분은 사회보장보험료 계정

5. 예비비 설정 및 사용 지침

-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재정부장에게 제출
- 재정부장은 당회에 보고하여 결의
- 제직회 보고 결의

6. 참고사항

※ 총회 교회회계 기준 적용

※ 총회 재무관리규정 적용

- 회계처리 기준 :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
부기원칙 : 진실성, 계속성, 중요성, 책임성, 준법성
- 항목 설정 기준 : 회계기준에 따라 항목을 설정하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과 계속 지출여부 등을 판단하여 알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선명하고 명백한 항목을 설정